

대상자 결정통지서

결정번호	
성명	생년월일
주소	
(전화번호 :)	

결정내용

귀하가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성평등가족부장관

직인